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60

발의연월일: 2021. 3. 2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윤관석 · 남인순

이원택 · 정청래 · 이성만

최인호 • 아수진비 • 양정숙

신현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무소, 공연장 등의 건축물과 숙박업, 목욕장업 등을 영 위하는 자에게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, 해당 절수설 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적절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, 이는 양변기 등에 표시하는 절수등급 표시가 임의규정이여서 국 민들이 절수설비를 쉽게 구별할 수 없는 데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수돗물의 절약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4항 및 제87조). 법률 제 호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항 중 "표시할 수 있다"를 "표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8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"거짓으로"를 "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3.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절수설비 등의 설치) ①	제15조(절수설비 등의 설치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	4
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	
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	
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	
급을 표시할 수 있다.	- <u>표시하여야 한다</u> 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8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87조(과태료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
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
부과한다.	.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
	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
	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2
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	4
수설비에 절수등급을 <u>거짓으</u>	<u>표</u> 시하지
<u>로</u> 표시한 자	아니하거나 거짓으로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· 2. (생략)
- 3.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 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의2. ~ 9. (생 략)

④·⑤ (생 략)

3	
1. •	2. (현행과 같음)
<u><</u> 식	- 제>

3의2. ~ 9. (현행과 같음) ④·⑤ (현행과 같음)